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7. 13.(목)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3년 7월 4일
- 회부일자: 2023년 7월 5일

3.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① 재산의 취득

(단위: m², 천원)

기관명	사업명	구분	수량	취득금액	담당부서	비고
충청북도 교육청	음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보수	건물	1,548.00	8,238,003	음성 교육지원청	
합 계(1건)		토지	0	0		
		건물	1,548.00	8,238,003		
		계	1,548.00	8,238,003		

② 재산의 처분

(단위: m², 천원)

기관명	사업명	구분	수량	처분금액 (대장가격)	담당부서	비고
충청북도 교육청	상촌초 대해폐교 처분	토지	9,426.00	41,340	영동 교육지원청	
		건물	769.35	117,401		
		소계	10,195.35	158,741		
합	계(1건)	토지	9,426.00	41,340		
		건물	769.35	117,401		
		계	10,195.35	158,741		

5. 검토의견

- 음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보수는 교육청 업무가 늘어나고 세분화, 다양해 지면서 사무실 공간 확충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전용회의실 확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한 공간 확보에 관한 것임
- 사업규모는 건물(증축) 1,548m², 건물(보수) 972.89m²으로 주요시설은 사무실 3실, 학교폭력심의회의실 및 상담실 3실, 대회의실 3실, 화장실 3.5실, 창고 1실, 휴게실 2실이며 청사 리모델링으로 이중창 교체, 외벽 드라이비트 교체, 석면 교체하는 것으로 취득 금액은 82억 3,800만 3천원임
- 청사 증축은 본관 좌측면 주차장에 3층 규모 증축으로 청사 부지내 자체용지며, 사업비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시설사업비 예산 단가 적용으로 사업규모 및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됨¹⁾
- 협소한 사무실, 회의실 공간과 화장실 부족을 개선하므로 교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업무 능률도 증대되며, 학교폭력대책

1) 아래 <참고 자료 1> 참조

심의 및 교육지원청의 각종 민원 업무로 교육청을 찾는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도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건축물 기준내용연수인 40년¹⁾을 초과하여 45년(1977.12.)이 된 청사에 증축 및 보수를 위하여 82억 예산 투입 대비 개축 및 신축과 비교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기존 주차장에 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주차공간이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확보가 필요해 보임
- 상촌초 대해폐교는 1991년 폐교되어 32년이 경과되었으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폐교활용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동군에 매각하려는 것임
- 상촌초 대해폐교 처분은 토지 5필지 9,426㎡, 건물 9동 769.35㎡를 영동군에서 백두대간 산촌 문화 보존 및 계승을 위한 산촌 문화마을 조성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 원하는 것으로 기준가격 2억 974만 2천원에(토지 공시지가 126,830천원, 건물 시가표준액 82,912천원) 매각 처분 계획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기준 40년 (하한 30년, 상한 50년)

참고 자료 1

□ 타 시도 교육지원청 공공건축물 공사비 비교 검토자료

지역	사업명	사업 규모	준공 (예정)일	공사비 (용역비 제외)	면적	m ² 당 공사비 (평당 단가)	비고
음성	청사 증축 및 보수	지상 3층	2025년	7,542,664 천원	1,548m ² (469평)	4,872천원/m ² (16,082천원/평)	2021년 기준 물가 상승률 비교 대비 평당 단가 4,395천원/m ² (14,506천원/평)
예천	청사 및 도서관 개축	지하 1층 지상 4층	2023년	22,287,730 천원	6,483.81m ² (1,962평)	3,437천원/m ² (11,359천원/평)	2021년 예산 편성
봉화	청사 이전 신축	지하 1층 지상 3층	2023년	8,587,749 천원	3,000m ² (908평)	2,862천원/m ² (9,457천원/평)	2021년 예산 편성

참고 자료 2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3. 20.>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건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건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건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